
『통일정책연구』
원고 집필 요령

I. 원고 제출 시 유의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각주 양식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예비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1. 원고 제출

- 원고 1부
- 저자사항 1부('첨부 파일' 항목에 업로드)

2. 원고 구성

1)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이하

- A4 기준 15페이지(글자 10pt/ 줄간격 160%) * 최대 20페이지까지 가능
-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등을 포함(국/영문 요약 제외)
- 아래아한글(Ver. 2007 이상)로 작성

2) 원고 순서

논문명(국문) 국어 요약문(주제어 포함/ 200자 원고지 3매) 목차 논문(본문) 참고문헌(1. 단행본, 2. 논문, 3. 기타 자료) 논문명(영문) 영문 요약문(key words 포함/ 200자 원고지 3매)

3) 원고 작성 양식

- 각주 및 참고문헌 양식은 아래의 'II.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 본문은 순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이름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옆에 괄호 속에 기재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 예에 따른다.

예1) II, 2, 가, (3), (나)

예2) I.

II.

1.

2.

가.

나.

다.

II.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 양식

1. 각주

- 각주는 원칙적으로 문장 끝에 넣고, 마침표나 쉼표 등 문장부호 뒤에 표기한다.
(예) 하였다.¹⁾ 되고,²⁾
-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한다.
- 각주에는 저자명, 저서명(논문명),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의 경우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의 출판년), 페이지 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페이지 표시는 아래와 같다.
(예) 각 페이지를 인용한 경우: p. 7, p. 9
(예) 여러 페이지를 인용한 경우: pp. 7~9, pp. 11~20.
-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에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가. 단행본

국문: 저자명,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p. 쪽수.
영문: 저자명,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p. 쪽수.

※ 출판사항에 관한 괄호 앞은 한 칸 띄어준다.

- 저서명은 국문의 경우 <『』(반각 겹낫표)>를 사용하고, 영문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김덕·이승훈,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 120.
(예) 존 레니에 쇼트 지음, 이현욱 외 옮김,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 110.
(예)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McGraw-Hill, 1948), pp. 146~148.

(예) Don Oberdorfer and Robert Carlin, *The Two Koreas*, 3rd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2014), p. 130.

(예) John Baylis,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6th edi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86.

※ 서지사항에서 출판지는 도시명을 사용하며, 정확하게 표기한다.

(예) NY (×) → N.Y. (○) 또는 New York (○)

(예) Washington, DC (×) → Washington, D.C. (○)

- 저자명으로 연구기관·단체, 정부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도 표기한다. 저자 3명까지는 기재, 4명부터는 「1인 이외의 공저」로 기재한다.

(예)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 1999), p. 22.

(예) 이흥구·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80년대의 대외적응』 (서울: 법문사, 1986), p. 3, pp. 9~10.

(예) 이상우 외, 『북한 4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서울: 을유문화사, 1988), p. 44.

- 원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편집자 또는 번역자의 이름만 밝히고, “ed.” 또는 “trans.” 으로 기재한다.

- 북한 자료

(예)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5.5.)”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9.

- 단행본의 일부 장, 절을 인용한 경우

(예) 이상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변화,”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통일 · 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39~81.

- (예) Hak Soon Paik, H. E. Chehabi, and Juan J. Linz,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in *Sultanistic Regimes*, eds. H. E. Chehabi, and Juan J. Linz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pp. 627~640.
- (예) Kenneth Waltz,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Response to My Critics,” in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Robert Keoha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 322.

나. 논문

국문: 저자명, “논문명,” 『저널명』, 권호 사항 (출판년도), p. 쪽수.
 영문: 저자명, “논문명,” *저널명*, 권호 사항 (출판년도), p. 쪽수.

- 학술지 등에서 인용한 경우
 - (예)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 제7권 1호 겨울호 (1998), p. 135.
 - (예)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 워크숍, 2004.7.25.), p. 14.
 - (예) 최승환, “남북한 통신·통행협정의 체결과제와 정책방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방안』 (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남북경협포럼 발표논문집, 2004.7.25.), p. 14.
 - (예) Gunnar Myrdal, “Underdevelopment and the Evolutionary Imperative,” *Third World Quarterly*, vol. 1, no. 2 (1979), pp. 24~42.
 - (예)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 (1965), pp. 6~9.

※ 학술지의 경우, vol. , no. 와 연도만을 표기한다.

※ 영문의 월 표기법

(예) Sep. (×) → September (○)

- 단행본에서 인용한 경우
(예)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 2001), p. 12.

※ 단행본이 ‘논문집’일 경우에 해당한다.

- 학위논문
(예)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p. 20.
(예) Hak 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p. 24.

다. 기타 자료

- 신문
(예) “9월 예정된 시진핑 방북·평양 남북정상회담도 밀리나,” 『조선일보』, 2018.8.30., A3.
(예) “‘리명박 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교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1.20.
(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1.12.31.

※ 본문에서는 『 』 삭제, 외국어의 경우 이탤릭체 표기

(예) 한겨레신문에서는 …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 *The Korea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 기사 날짜의 경우, <2016년 9월 26일>대신에 (2016.9.26.)으로 표기한다.

- 인터넷 자료
(예) 홍제환, “북한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인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22, 2017.7.28.), p. 2, <<http://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232c989e-2df0-4687-a725-8d4a0fddcd6b>> (검색일: 2019.10.11.).
(예) “북한 “태풍 ‘바비’ 내일 오전9시 평양 최대근접”…일부주민 대

피,” 『연합뉴스』, 202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07765150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0.8.27.).

(예) “North Korea Accuses US of Hostile Steps,” The Korea Times, August 31, 2018,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18/08/103_254802.html> (Accessed August 31, 2018).

(예) Chung-in Moon, “There Were No Losers at the Singapore Summit,” Foreign Affairs, June 19, 2018,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18-06-19/there-were-no-losers-singapore-summit>> (Accessed August 31, 2018).

(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미국 Fox News ‘스페셜리포트’와 인터뷰,” 2018.9.25.,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383>> (검색일: 2018.9.29.).

(예) Joel S. Wit, “In Strong Support of Ambassador Biegun,” 38 North, September 25, 2018, <<https://www.38north.org/2018/09/jwit092518/>> (Accessed September 29, 2018).

※ 인터넷 주소 표기 시 유의 사항: 해당 주소로 재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 법령 및 판례

- 법령은 「법령명칭」 (제정/개정일자 법령 호수), 법령 조항, <URL> (검색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3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8조 1항,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31#0000특허법>> (검색일: 2018.9.28.).

-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출처)을 표기하여야 한다.

(예)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도539 판결[국가보안법 등].

※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 인터뷰 자료

- 인터뷰 자료의 출처는 인터뷰 대상, 날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인터뷰(2016.9.6., 미국 워싱턴).

(예) 통일부 전 고위당국자 S 인터뷰(2016.7.28., 통일연구원).

(예) 북한이탈주민 K 인터뷰(2016.9.10., 통일연구원).

◦ 자문회의 자료

- 자문회의 자료의 출처는 자문자, 자료 제목, 날짜를 작성해야 하며, 자문회의 자료임을 밝힌다.

(예) 문경연, “남북중 삼각협력을 위한 GTI 협의체 활용 당위성 및 방안”(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18.10.30.).

◦ 드라마, 음반, 영화, 프로그램

(예) 최이섭 연출, <귀여운 여인>, MBC 드라마, 2003.11.10.~2004.6.4.

(예) 핑클, <2.5집 Special>, (서울: 로엔엔터테인먼트, 1999).

(예) 김정권 감독, <동감>, 2000.

(예) 이진민 CP, <이제 만나러 갑니다>, 채널A, 2011.12.4.~방영 중.

◦ 비공개 자료

-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 자료, 발주기관 비공개 자료 등 출처표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 자료: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라. 앞서 표기된 주에서 인용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

◦ 바로 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국문]

(예) 위의 책, p. 77. (단행본)

(예) 위의 글, p. 88. (논문)

[영문]

(예) *Ibid.*, p. 99.

- 바로 위 각주문헌 2개 중 하나를 인용한 경우

(예1) United Nations,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UN Doc. A/56/326 (6 September 2001), pp. 4~5, 41~43; 이신화, “유엔과 취약그룹(The Vulnerables): 난민, 기아, 빈곤, HIV/ AIDS 문제를 중심으로,” 박수길 편, 『21세기 유엔과 한국: 새로운 도전과 과제』 (서울: 오름, 2002), p. 504.

(예2) 이신화, 위의 글, pp. 504~505.

(예3) United Nations, *Ibid.*, p. 6.

마.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니며 앞에서 인용한 경우

- 주 번호 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으로 처리한다.

[국문]

(예)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p. 33.

(예)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p. 136.

[영문]

(예)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p. 99.

(예) Kenneth Waltz,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Reponse to My Critics,” p. 328.

※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은 약자, 부호 등은 일반적인 범례에 따라 개별 발간물 안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바. 재인용

- 내용이 최초로 수록된 원래의 자료를 먼저 쓰고, 그 내용이 인용된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재인용:’ 을 표기하고 그 뒤에 쓴다.

(예) Forsyth Jr., Saltzman, and Schaub Jr., “Remembrance of Things Past—the Enduring Value of Nuclear Weapons,” *Strategic Studies Quarterly*, Spring (2010), 재인용: 황일도, “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행태: 핵무기 개발, 재래식전력 배치, 연평도 포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p. 149.

2. 참고문헌

- 단행본-논문-기타 자료 순으로 정리한다.
- 언어 순으로는 국문-영문-중문-일어-기타 순으로 정리한다.
- 본문 각주/표그림 등에서 언급한 문헌은 모두 참고문헌에 표기되어야 한다.
- 같은 저자가 두 번 이상 나올 경우 _____로 표기한다.
- 배열 순서는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영문·기타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각주에서의 쉼표 대신 마침표를 사용하고 괄호를 제거한다. (출판사와 출판년도 사이는 쉼표 유지)
- 참고문헌에서는 모든 저자를 기술해야 한다.
 - 저자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기술한다.
다만,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까지만 기술하고 ‘외’를 붙인다.
-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제1저자는 ‘성+이름’ 순으로, 제2저자와 제3저자는 ‘이름+성’ 순으로 표시한다.
- 2인일 때는 and로, 3인 이상일 때는 쉼표(,)와 and로 나열한다.
(예) Chehabi, H. E., Hak Soon Paik, and Juan J. Linz.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In *Sultanistic Regimes*, edited by H. E. Chehabi and Juan J. Linz.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 재인용 표기
(예) Saltzman, Forsyth Jr. and Schaub Jr. “Remembrance of Things Past-the Enduring Value of Nuclear Weapons.” *Strategic Studies Quarterly*. Spring (2010). 재인용: 황일도. “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행태: 핵무기 개발, 재래식전력 배치, 연평도 포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 내용이 최초로 수록된 원래의 자료와 인용된 참고자료의 종류가 다를 경우(논문의 내용을 단행본에서 인용한 경우 등), 참고문헌의 위치는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합의서 및 선언문

- 합의서 및 선언을 인용(전문 게재 포함)할 경우, 참고문헌에 해당 합의서 및 선언문의 공식명칭 및 해당 문서 상 일자를 기술한다.

(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4.27.).

가. 단행본

국문: 저자명.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영문: 저자명.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예) 정성윤 · 이동선 · 김상기 · 고봉준 · 홍 민.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예)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옮김. 『21세기 자본주의』. 서울: 글항아리, 2015.

(예) Bre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 New York: Basic Books, 1977.

(예) _____. *Non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예) Kaag, John and Sarah Kreps. *Drone Warfare*. Cambridge: Polity Press, 2014.

(예) Putnam, Robert D.,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Y.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예) Waltz, Kenneth.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Response to My Critics." In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ited by Robert Keoha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본문 각주에서 단행본의 일부 장, 절을 인용한 경우, 참고문헌에는 장, 절 부분(저자 및 제목)을 제외한다.

나. 논문

국문: 저자명. “논문명.” 『저널명』. 권호사항, 출판년도.

영문: 저자명. “논문명.” *저널명*. 권호사항, 출판년도.

- (예)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 2001.
- (예)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 1998.
- (예) 홍길동. “북한인권연구.” 『통일연구』. 제7권 1호, 1998.
- (예) Albright, M. “The Tes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7, no. 6, November/December 1998.
- (예) Myrdal, Gunnar. “Underdevelopment and the Evolutionary Imperative.” *Third World Quarterly*. vol. 1, no. 2, 1979.

다. 기타 자료

- 신문, 웹자료, 법령, 선언문·합의서, 인터뷰, 기타 순으로 작성한다.
 - (예) 『동아일보』.
 - (예) *Washington Post*.
 - (예) 미국 백악관 <www.whithouse.gov>.
 - (예) 통일연구원 <www.kinu.or.kr>.
 - (예) 청와대 <www1.president.go.kr>.
 - (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 1항.
 - (예)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도539 판결.
 - (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4.27.).
 - (예)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1.10.30., 통일연구원).
 - (예) 통일연구원 비공개 내부자료.
 - (예) 최이섭 연출. <귀여운 여인>. MBC 드라마. 2003.11.10.~2004.6.4.
 - (예) 핑클. <2.5집 Special>. 서울: 로엔엔터테인먼트, 1999.
 - (예) 김정권 감독. <동감>. 2000.
 - (예) 이진민 CP. <이제 만나러 갑니다>. 채널A. 2011.12.4.~방영 중.

※ 기타 자료가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1차적으로는 종류별로 분류하고(신문, 웹자료, 법령, 선언문·합의서, 인터뷰, 기타), 해당 종류 안에서 동일 언어로 구분한다(언어 순서: 국문-영문-중문-일어-기타).

◦ 인터넷 자료

- 인터넷 자료의 경우, 본문 각주에 상세 주소 및 검색일자를 기입(기존과 동일)하고 참고문헌에는 해당 웹사이트 명칭 및 메인 주소만 기술한다.

(참고) UN 산하 기구 등 기관의 명칭을 단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용한 자료의 웹사이트 메인창에 소개된(상단 왼쪽 및 하단에 위치) 명칭을 기재한다.